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○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
· (당초) 2026년 12월 31일 → (변경) 2031년 12월 31일

나. 용어, 인용사항 및 문구 등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10조, 제14조, 제15조, 제22조, 제24조, 제2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,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의2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음.

- 안 제2조, 제10조 및 제15조 등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’를 ‘벤처투자회사’로 변경하고, 관련 인용 조항과 명칭을 현행화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높였음.

- 다만, 기금 운용 방식이 단순한 자금 이체 등 중간 창구 기능에 머무는 측면이 있으므로, 향후에는 기금이 관내 중소기업 육성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.